공 정 거 래 위 원 회

제 2 소 회 의

의 결(약) 제2018 - 100호

2018. 11. 29.

사 건 번호 2018서제0177

사 건 명 (주)홍익니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

피 심 인 주식회사 홍익니트 서울 강남구 삼성로82길 27 대표이사 고〇〇

심 의 종 결 일 2018. 10. 18.

주 문

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김〇〇(〇〇〇) 대표)에게 편직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이 유

- 1.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
- 기 되심인 주식회사 홍익니트¹⁾는 섬유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

¹⁾ 이하 모든 사업자명에서 '주식회사'는 생략한다.

기업자인 김〇〇(〇〇〇〇 대표)에게 자신의 업에 따른 편직물 제조를 위탁하였으며,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⁾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.

- 2 김○○(○○○○ 대표)는 섬유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으로부터 편직물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,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.
-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김○○(○○○○ 대표)의 일반현황은 아래 <표 1>과 같다.

<표 1>

당사자 일반현황

(2016년 기준, 단위: 백만 원)

구분	상 호	대표자	영위업종	연간매출액
피심인	홍익니트	고ㅇㅇ	섬유 임가공	8,537
수급사업자	0000	김〇〇	섬유 임가공	915

※ 자료출처 : 당사자 제출자료

2.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

가. 인정사실 및 근거

괴심인은 2017. 1. 9. 수급사업자 김○○(○○○○ 대표)에게 편직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.

<표 2>

의뢰서 주요 내용 발췌

^{2) 2016. 3. 29.} 법률 제14143호로 시행된 것을 말하며, 이하 '법'이라 한다..

위탁내용	원재료 투입량(KG)	편직물 목표량(KG)	작업 시 주의사항
①스판(SPAN30D)	1,068	1,047	 나건 양해없이 납기 미준수시 소실분에 대해 책임이 있음 납품한 편직물에 하자 발생시 최종 정산시까지 대금지급 보류
②폴리(POLY30'S)	20,496	19,899	

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 답변서(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)를 통해 확인되며, 위 <표 2>와 같은 제조위탁 내역은 법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의뢰서를 통해 확인된다.

나. 관련 법규정

법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)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(「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- 1. 제조위탁의 경우: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
- 2. 수리위탁의 경우: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
- 3. 건설위탁의 경우: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
- 4. 용역위탁의 경우: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
-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,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(「전자서명법」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법 시행령 제3조(서면 기재사항) 법 제3조제2항에서 "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,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(이하 "목적물등"이라 한다)의 내용
- 2.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·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
- 3.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
- 4. 하도급대금(선급금,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
- 5.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·수량·제공일·대가

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

6. 목적물등의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

다. 피심인의 위 2. 가. 행위의 위법 여부

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, 피심인이 김〇〇(〇〇〇) 대표)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.

3. 처 분

7 피심인의 위 2. 가.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.

4. 피심인의 수락내용

회심인이 2018. 7. 24. 위 2. 가.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
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.

5. 결 론

9 피심인의 위 2. 가.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,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8년 11월 29일

의 장 위 원 장덕진

위 원 곽세붕

위 원 박재규